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485
----------	-----

발의연월일 : 2009. 5. 7.

발 의 자 : 전병배의원의외 6인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행복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첨단의료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나. 첨단의료산업육성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다. 첨단의료산업단지 조성(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라. 첨단의료산업육성기금 운용(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마. 첨단의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 지원금액 결정후 예산 반영
- 다. 관련부서 협의 : 예산담당관실, 경영법무담당관실, 투자마케팅과, 대덕특구과, 과학산업과와 협의됨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행복을 증진시키고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첨단의료”란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첨단의료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가. 첨단의료와 관련된 의약품·한약·의료기기·장애인 보조기구·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의 연구·개발·제조·가공·보관 및 유통 산업
 -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른 약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제공되는 첨단의료서비스 및 의료관광산업
 - 다. 그 밖에 주민의 건강 및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3. “첨단의료산업단지”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의료산업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단지를 말한다.
- ②제1항의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3조(대전광역시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첨단의

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첨단의료산업의 육성 · 지원

제4조(육성기본계획수립) ①시장은 5년마다 첨단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첨단의료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첨단의료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2.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첨단의료산업의 여건과 실태
3.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4. 첨단의료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시장은 첨단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 식품 등을 개발하는 첨단의료업체와 그 연구소
2. 첨단의료 관련 국·공·사립대학(원), 연구기관
3. 정부나 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4.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5. 그 밖에 시장이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지원사업 등) ①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2. 첨단의료기술 및 제품의 상용화사업
3. 첨단의료산업 관련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사업
4. 첨단의료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
5. 해외 교류,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및 판매촉진사업
6. 첨단의료산업 개발 단계별 평가·시험비용 지원
7. 첨단의료관광의 증진을 위한 촉진사업
8. 그 밖에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가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제19조의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육성·지원법인 설립) 시장은 효율적인 첨단의료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첨단의료산업 육성업무를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3장 첨단의료산업단지 조성

제8조(조성지역) ①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첨단의료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시장은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9조(유치대상) 산업단지내의 유치대상은 제5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사업자로 하며 입주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용지의 조성) 시장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입주지원 등) 시장은 산업단지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나 기관 등의 입주와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토지를 매입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분양가 차액의 보조
2. 토지나 건물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대금 분할상환
3. 숙소,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4.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5. 그 밖에 입주자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금의 지원

제12조(유치 지원) 시장은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집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산업관련 기업이나 그 연구소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첨단의료산업육성기금 운용

제13조(첨단의료산업육성기금 설치 등) 시장은 첨단의료산업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시 외의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입금
4. 기타 수입금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기금의 용도 및 관리) ①기금은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시장은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19조의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8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경제과학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과학산업과장
3. 기금출납원 : 첨단의료산업육성기금관리업무 담당사무관

제5장 첨단의료산업육성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첨단의료산업 육성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첨단의료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4. 첨단의료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첨단의료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6.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첨단의료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 의원

2. 첨단의료산업 분야의 교수 및 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

3. 의료산업과 관련 있는 전·현직 공무원

4. 그 밖에 첨단의료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

산업과장이 된다.

제25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2. "의약품"이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술"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을 말한다.
5.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연구·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의료연구개발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나.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1) 의료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3) 연구기관
 - (4) 정부출연기관 등
7.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지원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8.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 첨단의료복합단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